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1. 목적 용역사업 추진 시 제공되는 행정정보, 비밀정보 및 용역 성과물 등이 외부에 유출되어 사회적 문제야기 및 공공신뢰성 저하 등 보안위협이 발생함에 따라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 대책 강화	제 1 장 개 요 1.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및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공단이 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업무를 외부 업체·기관 등(이하 “수탁자”)에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업무 처리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6조, 법 시행령 제15조, 제28조 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고시), 개인정보 보호지침(고시) 다. 정보통신망법 제25조 /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고시)	2. 관련근거 가. ~ 나. (현행과 동일) 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6조(수탁자의 선정 시 고려사항), 제17조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 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안전조치의 적용 원칙) 마. 양천구시설관리공단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제25조, 제26조
	3. 적용 범위 공단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규정, 지침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지침을 따름
3. 용어정의 가. ~ 다. (생략)	4. 용어 정의 가. ~ 다. (현행과 동일) 라. 개인정보 처리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의미
	제 2 장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개념 및 판단 1.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개념 가. 계약의 형태와 종류를 불문하고 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의미 나.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과 제3자 제공의 구분

현행

개정안

가. 개인정보 위탁관리

1) 위탁계약서에 개인정보보호 의무사항 명시

2) 위탁내용 공개

가. 개인정보 위탁관리(삭제)

1)~4)항 삭제

개정안

제3자 제공

구분	업무 위탁	제3자 제공
관련 조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예시	회원관리, 주차관리 시스템 등	청렴도조사, 만족도조사 등
이전 목적	정보주체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처리	제3자의 이익, 설문조사를 위해 처리
이전 방법	위탁 사실 공개 (공단홈페이지 - 개인정보처리방침)	법에 따라 제공 목적 등 고지 (공단 홈페이지 - 업무공지)
관리·감독 의무	위탁자	제공받는 자(제3자)
손해배상책임	위탁자 및 수탁자 부담	제공받는 자(제3자) 부담

2.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판단 기준

가. 수탁자에게 업무를 위탁 시,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 지침에 따라 업무 수행

나. 판단 주제 : 혁신성과팀, 각 사업장

다. 판단 기준

기 준	예 시
공단 업무 수행을 위해 보유 중인 개인정보를 수탁자에게 제공	공단 서비스 이용, 직원 교육 위탁 운영 등
공단 업무 수행을 위해 수탁자가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생성, 이용, 저장, 파기 등)	직원 채용, 설문 조사 위탁, 기록물 파기 등
(정보화사업) 수탁자가 공단 개인정보처리시스템 DB 등에접근하여 업무 수행	시스템 구축·개발·운영, 통합 유지보수, 프로그램 개발 등
※ 단순시스템 유지 보수도 수탁자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DB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임	
※ 단, 시스템의 부품만 교체하는 등 서버나 DB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해당하지 않음	

4. 관리사항

제 3 장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절차 및 조치 사항

현행	개정안																														
3) 수탁자교육 및 감독 4)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사항 준수 나.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 절차 사업단계 사업 담당 보안 담당 입찰단계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관리계획 수립 보안관리계획 적정성 검토 계약단계 계약서 작성시 보안준수사항 및 배상책임 명시 계약서 내용중 보안관련사항 검토 수행단계 보안관리계획에 따라 사업 수행 참여인원·문서· 장비 등에 대한 보안점검·교육 종료단계 제공자료·산출물 전환 회수 용역사업 관련자료 보안조치 확인 <외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절차>	1.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절차 <table><tr><th>절차</th><th>소관부서</th><th>주요 내용</th></tr><tr><td>1.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 전</td><td>각 사업장</td><td>-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여부(위협성 확인) 및 범위 결정 -수탁자 선정 시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점검 사항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td></tr><tr><td>↓</td><td></td><td></td></tr><tr><td>2.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 시</td><td>각 사업장 혁신성과팀</td><td>-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문서(계약서) 작성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사전 점검 -개인정보 인수증 작성 -계약 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내용을 혁신성과 팀으로 공문서 통보 ※ (혁신성과팀)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내용 홈페이지 에 공고</td></tr><tr><td>↓</td><td></td><td></td></tr><tr><td>3.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수행 중</td><td>혁신성과팀</td><td>-수탁자 교육 실시 -수탁자 관리 · 감독(개인정보 처리 현황 점검) -(재위탁 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재위탁 동의서 작성</td></tr><tr><td>↓</td><td></td><td></td></tr><tr><td>4.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종료 시</td><td>각 사업장 혁신성과팀</td><td>-개인정보 반환 · 파기 여부 등 점검(5일 이내)</td></tr><tr><td>↓</td><td></td><td></td></tr><tr><td>5.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현황 점검</td><td>혁신성과팀</td><td>-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현황 확인 등</td></tr></table> 2.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조치 사항 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 전 1)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여부(위협성 확인) 및 범위 결정 - 혁신성과팀(각 사업장)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위탁 여부 및 범위를 결정 ※ 개인정보 유출 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경우 위탁 여부 재검토, 수탁자 감독 강화,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명확화 등의 대책 필요 - 특히, 대량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등 처리가 포함된 업무는 유출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크므로 위탁 여부를 신중히 결정 - 혁신성과팀은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수탁자와 사전협의 등을 통해 업무의	절차	소관부서	주요 내용	1.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 전	각 사업장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여부(위협성 확인) 및 범위 결정 -수탁자 선정 시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점검 사항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			2.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 시	각 사업장 혁신성과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문서(계약서) 작성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사전 점검 -개인정보 인수증 작성 -계약 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내용을 혁신성과 팀으로 공문서 통보 ※ (혁신성과팀)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내용 홈페이지 에 공고	↓			3.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수행 중	혁신성과팀	-수탁자 교육 실시 -수탁자 관리 · 감독(개인정보 처리 현황 점검) -(재위탁 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재위탁 동의서 작성	↓			4.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종료 시	각 사업장 혁신성과팀	-개인정보 반환 · 파기 여부 등 점검(5일 이내)	↓			5.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현황 점검	혁신성과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현황 확인 등
절차	소관부서	주요 내용																													
1.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 전	각 사업장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여부(위협성 확인) 및 범위 결정 -수탁자 선정 시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점검 사항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																															
2.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 시	각 사업장 혁신성과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문서(계약서) 작성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사전 점검 -개인정보 인수증 작성 -계약 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내용을 혁신성과 팀으로 공문서 통보 ※ (혁신성과팀)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내용 홈페이지 에 공고																													
↓																															
3.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수행 중	혁신성과팀	-수탁자 교육 실시 -수탁자 관리 · 감독(개인정보 처리 현황 점검) -(재위탁 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재위탁 동의서 작성																													
↓																															
4.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종료 시	각 사업장 혁신성과팀	-개인정보 반환 · 파기 여부 등 점검(5일 이내)																													
↓																															
5.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현황 점검	혁신성과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현황 확인 등																													

현행	개정안
	범위 명확화 2) 수탁자 개인정보 보호 역량 평가 - 개인정보처리 담당자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시 점검사항 [붙임1]'에 따라 수탁자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평가하고 개인정보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 ※ 계약부서에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혁신성과팀은 최종 선정된 수탁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평가 3)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 개인정보처리 담당자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관련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수립 나. 개인정보 처리 위탁 문서 작성 1) 개인정보 처리 위탁 문서 작성 - 계약부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 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 위탁 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붙임2]'를 작성 ※ 계약서 작성 주체는 경영지원팀(기관장 서명·날인)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필수 포함 사항 > ①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수탁자가 어떤 업무를 어떤 범위에서 처리하는지 명확하게 기재 ② 재위탁 제한 → 수탁자가 업무를 재위탁 하는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 위탁할 경우 사전 동의 필요 명시 ③ 개인정보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 접근통제, 암호화, 접근기록 보관 등 정보보호 조치 의무 명시 ④ 위탁자의 관리·감독 → 위탁자가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⑤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수탁자의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 명시 ⑥ 개인정보 파기 또는 반환 →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조항 포함 ⑦ 계약 기간 → 위탁 계약의 유효 기간을 명시 ⑧ 기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

현행	개정안
	- 수탁자는 ‘보안 서약서[붙임3]’를 작성 ※ 수탁 직원 변경 또는 재위탁 시에도 ‘보안 서약서’ 작성 2)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사전 점검 - 개인정보처리 담당자는 계약 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사전 점검표[붙임4]’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전 위험 요인 차단 3) 개인정보 인수증 작성 - 수탁자는 위탁자료부터 종이문서, 전자파일, 보안USB, CD 등의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인수증[붙임5]’ 작성 4)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내용 통보 - (자 사업장) 계약 시 위탁 내용을 혁신성과팀으로 통보 • 통보 내용 : 위탁명, 위탁 항목, 위탁 기간, 수탁자 정보(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재위탁 시)재수탁자 정보(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 (혁신성과팀) 통보 받은 위탁 내용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 • 공개 경로 : 홈페이지 → 고객센터 → 개인정보 처리방침(개인정보 처리의 위탁현황) 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수행 중 1) 수탁자 교육 실시 - (수행 주제) 혁신성과팀 - (교육 횟수) 연 2회 이상 - (교육 방법) 현장, 서면, 교육 기관 활용 등 수탁자 협의 후 결정 ※교육은 공단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직접 실시가 원칙이나, 수탁자 자체 교육도 가능 - (교육 내용) 개인정보처리의 기술적·관리적 안전 조치, 개인정보담당자 교육 사항 등 2) 수탁자 관리·감독(개인정보 처리 현황 점검) - (수행 주제) 혁신성과팀 - (점검 횟수) 연 2회 이상 - (점검 방법) ‘수탁업체 개인정보처리 관리 실태 점검표[붙임6]’에 따라 점검 ※ 공단이 수탁자를 감독하는 방법에 대하여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바는 없으므로 자료제출 요구, 현장 방문, 점검 도구 배포 등 합리적인 수단을 다양하게 활용 ※ 공단이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기적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종료 시 1) 개인정보 반환·파기 - 수탁자는 위탁 문서에 명시된 개인정보 처리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사라진 경우, 지체 없이(5일 이내) 개인정보를 공단에 반환하거나 파기 후 ‘개인정보 반환·파기 확인서[붙임7]’ 작성

현행	개정안
	- 공단은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반환·파기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 < 개인정보 파기방법 > 수탁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해야 함 ① 완전 파괴(소각, 파쇄 등) → 종이 문서, 하드디스크나 자기테이프는 파쇄기로 파기하거나 용해, 또는 전문 파쇄 업체 이용 ②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 디가우저(Degausser)를 이용해 하드디스크나 자기테이프에 저장된 개인정보 삭제 ③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 개인정보가 저장된 하드디스크에 대해 완전 포맷(3회 이상 권고), 데이터 영역에 무작위 값(0, 1 등)으로 덮어쓰기(3회 이상 권고), 해당 드라이브를 완전한 알고리즘 및 키 길이로 암호화 저장 후 삭제하고 암호화에 사용된 키 완전 폐기 및 무작위 값 덮어쓰기 등 2)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종료 후 개인정보의 추가 처리 - 위탁 종료 후라도 법률상 의무 이행, 민원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보관 등 추가 처리가 필요한 경우, 위탁 문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
다. 외부 용역사업 계획단계부터 완료시까지 보안관리방안 1) ~ 4) (생략)	제 4 장 개인정보처리 위탁 시 단계 별 안전성 확보조치 1. ~ 4. 현행과 동일
	제 5 장 기타 유의 사항 1. 손해배상책임 가. 위탁자의 사용자 책임 1)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위탁자의 소속 직원으로 간주 2) 손해배상 청구에서 위탁자는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의한 ‘사용자 책임(대위책임)’을 부담 - 수탁자에 대한 선정 및 교육, 관리·감독 등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위탁자는 사용자 책임을 면함 ※ 선정 및 교육, 관리·감독 이행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위탁자가 부담

현행	개정안
	나. 수탁자의 사용자 책임 1)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시, 그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 2. 개인정보 처리 업무 재위탁 시 준수 사항 가. 원칙 1) 개인정보 처리 업무 재위탁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성을 높이므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 나. 개인정보 총괄부서 조치 사항 1) 혁신성과팀은 재수탁자를 교육하고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 2) 혁신성과팀은 재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재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함 다. 수탁자 조치 사항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려는 수탁자는 재위탁 사실을 위탁부에 미리 알리고 '개인정보 처리 업무 재위탁 동의서[첨부 10]'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함 2) 수탁자는 재수탁자의 관계에서는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의한 '사용자 책임(대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재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음 라. 재수탁자 조치 사항 1) 재수탁자는 수탁자와 동일하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수행해야 함 3. 상벌 규정 보안 용역 중 발생하는 보안 위규 사항 및 처리기준은 「[붙임9]양천구 보안용역업체 보안특약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붙임1 개인정보 제공위탁 관리지침 붙임2 용역업체 보안교육자료 붙임3 보안관련 서식 붙임4 양천구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붙임1]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시 점검사항 [붙임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붙임3] 보안서약서(대표자, 참여직원) [붙임4]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시 사전 체크리스트 [붙임5] 개인정보 인수증 [붙임6] 수탁업체 개인정보처리 관리 실태 점검표 [붙임7] 개인정보 반환·파기 확인서 [붙임8] 개인정보 위탁업무 처리업체 보안교육 자료 [붙임9] 개인정보 처리 업무 재위탁 동의서 [붙임10] 양천구 보안용역업체 보안특약(참고)